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대 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기 간 : '20. 08. 21.(금) ~ 별도해제 시

다. 제도기간

- (당초) '20. 08. 21. ~ '20. 09. 30.

- (연장) '20. 10. 01. ~ '20. 10. 12.

라. 내 용

- 실내*, 실외**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 단,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*실내 : 버스, 택시, 기차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**실외 :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
마. 이 유

-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소규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
- 추석 연휴기간 인구이동으로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행 중인 “실내·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” 행정명령 제도기간을 관련 과태료 법조항 시행전까지 제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바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사.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아. 관련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

2.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10월 1일

전라남도지사

